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전종합계획 변경 명문화〉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7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발전종합계획 변경 명문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9.
3. 회부연월일 : 2024.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의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발전종합계획 변경 명문화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 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 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② ~ ⑪ (생략)¹⁾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 ----- ----- -----수립하되, 환경 및 여건 변 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이를 변경할 수 있다.</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제1항),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1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1.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개요 >

□ 개요

- (의의)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
- (근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 (기간/부처) '11년 ~ '30년(20년) / 국토부 등 10개 부처
- (대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3개 시·도, 15개 시·군
- (규모) 225개 사업, 13.2조원(국비 5.4조원, 지방비 2.2조원, 민자 5.6조원)

□ 추진경과

- 「접경지역 지원법」 전부개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11.5.19)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11.7.27.)
 - * (기존) 165개 사업 18.8조원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19.1.23.)
 - * (기존) 165개 사업 18.8조원 → (변경) 225개 사업 13.2조원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12~'23년) 사업계획 수립·추진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23~현재)
 - ※ 현재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중인('23.11월 ~ 현재)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현행법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제10항)²⁾, 이에 따라 2019년 1차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었고('19.1.23.), 2023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 중임.

따라서, 개정안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명문화하여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적시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유사 입법례³⁾를 참조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 타당성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6

3) 「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